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593-14

# 식물방역법

2012. 10. 31.





# 식물방역법령 제·개정 일자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 정	1961.12.30	법률 제908호	제 정	1996.12. 5	대통령령 제15176호	제 정	1963. 4.16	농림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1966. 3.29	법률 제1772호	일부개정	1999. 7.29	대통령령 제16492호	일부개정	1964. 4. 9	농림부령 제157호
일부개정	1969. 8. 4	법률 제2135호	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 제17779호	일부개정	1965. 5. 6	농림부령 제180호
타법개정	1996. 8. 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1965. 8. 7	농림부령 제189호
전부개정	1995.12. 6	법률 제5021호	일부개정	2004. 7.24	대통령령 제18485호	일부개정	1967. 1. 6	농림부령 제236호
일부개정	1999. 2. 5	법률 제5764호	타법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	전부개정	1969. 8. 4	농림부령 제373호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758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일부개정	1972. 2.22	농림부령 제476호
일부개정	2002. 5.13	법률 제6696호	전부개정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1호	일부개정	1972. 9.27	농림부령 제502호
일부개정	2004. 1.29	법률 제7136호	일부개정	2011. 3.29	대통령령 제22732호	일부개정	1973.10.20	농수산부령 제549호
일부개정	2006. 9.27	법률 제7994호	타법개정	2011. 6. 7	대통령령 제22962호	일부개정	1974. 3.21	농수산부령 제565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일부개정	1976.12.20	농수산부령 제658호
전부개정	2008. 3.21	법률 제8930호	일부개정	2012. 1.13	대통령령 제23508호	일부개정	1979. 3.29	농수산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18호	타법개정	2012. 7.24	대통령령 제23983호	일부개정	1981.12.28	농수산부령 제848호
타법개정	2011. 7.25	법률 제10898호				타법개정	1983. 6.27	농수산부령 제891호
일부개정	2011. 7.14	법률 제10839호				일부개정	1983.11.11	농수산부령 제899호
일부개정	2011.11.14	법률 제11077호				일부개정	1986. 6.13	농수산부령 제958호
타법개정	2011. 7.25	법률 제10938호				일부개정	1991. 1.23	농림수산부령 제1064호
						일부개정	1991.12.20	농림수산부령 제1089호
						일부개정	1993. 2. 8	농림수산부령 제1112호
						일부개정	1994.12.23	농림수산부령 제1163호
						일부개정	1996. 3.19	농림수산부령 제1225호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1996.12. 7 농림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1998.12.16 농림부령 제1298호
		일부개정 1999. 8.10 농림부령 제1340호
		일부개정 2001.10.10 농림부령 제1403호
		일부개정 2002.11.14 농림부령 제1430호
		일부개정 2004. 8. 7 농림부령 제1479호
		일부개정 2006. 5.12 농림부령 제1527호
		일부개정 2007. 3.28 농림부령 제1551호
		일부개정 2007.11.13 농림부령 제1571호
		타법개정 2007.11.20 농림부령 제1574호
		타법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타법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6호
		전부개정 2009. 3.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2호
		일부개정 2010. 8.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5호
		타법개정 2011. 6.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일부개정 2012. 1.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4호
		타법개정 2012. 3.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12.10.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 목 차

식물방역법 [법률 제10938호, 2011.7.25]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b>제1장 총칙</b>		
제1조 (목적) ..... 9	제1조 (목적) ..... 9	제1조 (목적) ..... 9
제2조 (정의) ..... 9		제2조 (가공품의 범위) ..... 9
		제3조 (훈의 범위) ..... 10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1		제4조 (검역병해충) ..... 10
제4조		제5조 (규제비검역병해충) ..... 11
제5조		
<b>제2장 검역</b>		
<b>제1절 통칙</b>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 12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 12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 14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 14
제7조의2 (식물검역관) ..... 15		제8조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 15
제7조의3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 17		제9조 (식물검역관의 증표) .....17
제7조의4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18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18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b>제2절 수입검역</b>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 19		제10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9조 (수입항) ..... 20		제11조 (수입항) ..... 20
제10조 (수입 금지) ..... 21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 21	제12조 (수입 금지 식물 등) ..... 21
제11조 (수입제한) ..... 23		제13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 21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 23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 및 검역 신청) ..... 23
		제15조 (검역의 준비조치) ..... 25
		제16조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 25
		제17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 26
		제18조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 26
제12조의2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 28		제18조의2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 28
		제18조의3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 방법 등) ..... 29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 30		제19조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 30
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 33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33
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 34		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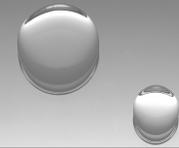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 36  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 39 제17조의2 (검역합격의 취소 등) ..... 39 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 40 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 ..... 40		제22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 36 제23조 (소독·폐기·반송·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 36 제24조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 37 제25조 (소독·폐기의 장소) ..... 37 제26조 (소독·폐기·반송 및 반출의 확인) ..... 37 제27조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 38 제28조 (소독·폐기 비용의 청구) ..... 38 제29조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 39  제29조의2 (검역 수수료 등) ..... 40
<b>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b>		
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 41  제21조 (경유기간) ..... 43 제22조 (사고발생 신고) ..... 43 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 44 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 44 제25조 (도착 신고) ..... 44 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 45 제27조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 45		제30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 41 제31조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 43 제32조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 43  제33조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 44  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처분기준) ..... 45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절 수출검역</b></p> 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 46  제28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 48 제29조 (검역장소) ..... 49 제29조의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49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 국내검역</b></p> 제30조 (국내검역) ..... 51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방제</b></p> 제31조 (방제) ..... 51 제31조의2 (식물방제관) ..... 52  제32조의3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 54 제31조의4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54  제31조의5 (분포조사) ..... 56 제31조의6 (역학조사) ..... 57	제3조의2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 54 제3조의3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 ..... 55	제35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 46 제36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 47 제37조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 48 제37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 48      제37조의3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 52 제37조의4 (식물방제관의 증표) ..... 54   제37조의5 (분포조사) ..... 56 제37조의6 (역학조사) ..... 57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제32조 (방제계획) ..... 58		
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60		제37조의7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60
제34조 (보고의무) ..... 61		
제35조 (공동 방제) ..... 61		
제36조 (방제명령의 내용) ..... 62		제38조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 62
제37조 (비용 부담) ..... 63	제4조 (비용 부담) ..... 63	제39조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 63
제37조의2 (밭갈의 금지) ..... 63		제39조의2 (밭갈의 금지기간 등) ..... 63
제38조 (손실보상) ..... 64	제4조의2 (손실보상 범위 등) ..... 64	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 ..... 64
		제41조 삭제
제38조의2 (생계안정 지원) ..... 66	제4조의3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 66	제42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 67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 67		
<b>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b>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 68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신청 등) ..... 68
		제44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 69
		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 ..... 69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 70
		제46조의2 (준수사항 등) ..... 70
제40조의2 (결격사유) ..... 71		제46조의3 (지위승계) ..... 72
제40조의3 (지위승계) ..... 72		제47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 73
제41조 (등록취소 등) ..... 73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b>제5장 보칙</b>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 74		제48조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 74
제43조 (포상금) ..... 75	제5조 (포상금의 지급) ..... 75	
제44조 (책임 면제) ..... 76		
제45조 (시설 지원) ..... 76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 76	제6조 (권한의 위임) ..... 76	
<b>제6장 벌칙</b>		
제47조 (벌칙) ..... 80		
제48조 (벌칙) ..... 82		
제48조의2 (벌칙) ..... 83		
제48조의3 (미수범) ..... 84		
제49조 (양벌규정) ..... 84		
제50조 (과태료) ..... 85	제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85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85	
<b>부칙</b> ..... 86	<b>부칙</b> ..... 86	<b>부칙</b> ..... 86

#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0.2.4, 2011.7.14&gt;</p> <p>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p> <p>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p> <p>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p> <p>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p> <p>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가공품의 범위)</b>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li> <li>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li> <li>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li> <li>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li> <li>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li> </ol> <p>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p> <p>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p> <p>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p> <p>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p> <p>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p>		<p>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b>제3조(흙의 범위)</b>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li> <li>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lt;개정 2011.6.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li> <li>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li> <li>3. 검역검사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li> </ol> <p><b>제4조(검역병해충)</b>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p> <p>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p> <p>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p> <p>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p> <p>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p> <p>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p> <p>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p> <p><b>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p>		<p>병해충을 말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1. 금지 병해충</p> <p>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p> <p>가. 별표 1의 병해충</p> <p>나.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가목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p> <p>2. 관리 병해충</p> <p>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p> <p><b>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b>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7.14] [종전 제3조는 제7조의2로 이동 &lt;2011.7.14&gt;]</p> <p><b>제4조</b> [제4조는 제7조의3으로 이동 &lt;2011.7.14&gt;]</p> <p><b>제5조</b> [제5조는 제7조의4로 이동 &lt;2011.7.24&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검역</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통칙</b></p> <p><b>제6조(병해충위험분석)</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b> ①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li> <li>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p> <p>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p> <p>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 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li> <li>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li> <li>3. 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li> </ol> <p>③ 검역검사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④ 삭제 &lt;2012.1.13&gt;</p> <p>⑤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b>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p>		<p>한 세부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gt;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lt;2012.1.13&gt;]</p> <p><b>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b>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li> <li>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li> <li>3. 그 밖에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li> </ol> <p>②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li> <li>2.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li> <li>3.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li> </ol>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7조의2(식물검역관)</b>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및 농림수산물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③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li> <li>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li> <li>3. 그 밖에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li> </ol> <p>[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lt;2012.1.13&gt;]</p> <p><b>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b>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은 농림수산물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수산물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이하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제3조에서 이동 &lt;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1. 농림수산식품부 식물검역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 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 다)에서 6개월 이상 식물검역 분야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 신규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p> <p>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그 소속 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를 6개 월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 이 정한 식물검역관 자격 준비과정의 교육 을 이수한 사람</p> <p>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의 검역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④ 제2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p> <p>⑤ 검역검사본부장은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관 자격 관리대장을 작 성·비치(備置)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검사본 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b>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 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 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p>		<p>⑦ 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검역을 제외한 수출검역으로 한다. &lt;신설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li> <li>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li> <li>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li> </ol> <p>⑧ 그 밖에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lt;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b>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2.1.13&gt;</p> <p>[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lt;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1.7.14&gt;</p> <p>⑤ 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 [제4조에서 이동 &lt;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b>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진단·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b>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b>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lt;2011.7.14&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수입검역</b></p> <p><b>제8조(식물검역증명서)</b>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li> <li>2. 병해충의 예방·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li> <li>3. 병해충 분류·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li> <li>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li> <li>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li> <li>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li> <li>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p>	<p><b>제10조(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b> 법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li> <li>2. 휴대하거나 우편·택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그 밖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b>제9조(수입항)</b>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li> <li>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li> <li>4.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li> <li>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li> <li>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li> </ol> <p><b>제11조(수입항)</b> 법 제9조에서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및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출입</li> </ol>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10조(수입 금지)</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li> <li>병해충.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li> <li>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li> <li>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li> </ol>	<p><b>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b> 법 제10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허가를 받은 항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의 이륙·착륙 허가를 받은 공항</li> <li>「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li> </ol> <p><b>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b>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p> <p>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1.6.15&gt;</p> <p><b>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b>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 2011.7.25&gt;</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p> <p>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p> <p>3. 삭제 &lt;2011.7.14&gt;</p> <p>③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3.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p> <p>4.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p>	<p>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1.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p> <p>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gt;</p> <p>③ 검역검사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1.6.15&gt;</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11조(수입제한)</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p> <p><b>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b>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p>		<p><b>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b>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lt;신설 2011.7.14&gt;</p> <p>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p> <p>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p> <p>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lt;신설 2011.7.14&gt;</p> <p>④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⑤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p>		<p>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gt;</p> <p>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검사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는 경우</p> <p>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p> <p>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보세운송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1.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⑥ 식물검역관은 제5항에 따른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⑦ 제6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p> <p>3. 삭제 &lt;2012.1.13&gt;</p> <p>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은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의 세부 절차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15조(검역의 준비조치)</b>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면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開裝)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b>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소독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li> <li>2.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12.1.13]</li> </ol> <p><b>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b>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b> ① 법 제12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류에 의한 검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2. 현장검역</p> <p>3. 실험실정밀검역</p> <p>4. 격리재배검역</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검역 시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lt;개정 2012.1.13&gt;</p> <p>③ 법 제7조의3, 법 제12조, 법 제12조의2 및 법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의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다만,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p> <p>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가. 해당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p> <p>나. 해당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b>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p> <p>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p>		<p>④ 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p> <p>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등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역 대상, 절차, 방법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b>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의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 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p> <p>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②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p> <p>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 검사방법 및 폐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p>		<p>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할 것</li> <li>2. 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li> <li>3. 목재포장재의 수피(樹皮)를 제거할 것</li> </ol> <p>[본조신설 2012.1.13]</p> <p><b>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b>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26&gt;</p> <p>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p> <p>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13조(격리재배 검역)</b>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구근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p> <p>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각</li> <li>2.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li> <li>3. 가공처리</li> </ol> <p>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13]</p> <p><b>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b>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훼의 구근류(球根類)</li> <li>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li> <li>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수) 및 삽수(插穗) 중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li> <li>4. 양딸기 묘(苗)</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5.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p> <p>6.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li> <li>2.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검역 검사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li> <li>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li> <li>4.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 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li> <li>5.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용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만, 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장검역</li> <li>2. 실험실정밀검역</li> </ol> <p>④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⑤ 식물검역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따르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 검사의 종료 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li> <li>2. 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b> ①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②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③ 검역장소의 지정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④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검역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lt;신설 2011.7.14&gt;</p> <p>⑥ 「관세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은</p>		<p>⑥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b>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lt;개정 2012.1.13&gt;</p> <p>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지정신청하려는 검역장소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확인할 수 있되,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2.10.31&gt;</p> <p>1. 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b>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b>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2.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ol>		<p>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삭제 &lt;2012.10.31&gt;</li> <li>3. 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만 첨부한다)</li> </ol> <p>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gt;</p> <p>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lt;개정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b>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목개정 2012.1.13]</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li> <li>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li> </ol> <p>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lt;개정 2011.7.14&gt;</p> <p>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14]</p> <p><b>제16조(검역 결과 처분)</b>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li> <li>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li> <li>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li> <li>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li> <li>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li> <li>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li> </ol>		<p><b>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b>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li> <li>2.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li> <li>3.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li> </ol> <p><b>제23조(소독·폐기·반송·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b>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7.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p> <p>② 식물검역관은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 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7.14&gt;</p> <p>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p>		<p>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b>제24조(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b> ①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b>제25조(소독·폐기의 장소)</b> 법 제7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lt;개정 2012.1.13&gt;</p> <p><b>제26조(소독·폐기·반송 및 반출의 확인)</b>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가. 우편으로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p> <p>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p> <p>⑤ 식물검역관이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14]</p>		<p>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船荷證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p> <p><b>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b>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목재포장재가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b>제28조(소독·폐기 비용의 청구)</b> ①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② 제1항에 따라 소독·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17조(검역합격증명서)</b>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b>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b>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p> <p>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독·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gt;</p> <p><b>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b>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검역대상물품(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14]</p> <p><b>제18조(검역의 방법 등)</b>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검역의 방법, 검사·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b>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b>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b>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인증원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수수료를 인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3]</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p> <p>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p> <p>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1.7.14&gt;</p> <p>[제목개정 2011.7.14]</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b></p> <p style="text-align: center;">&lt;개정 2011.7.14&gt;</p> <p><b>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b> ①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p> <p>②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b></p> <p>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신청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과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3.26&gt;</p> <p>1. 적하목록(積荷目錄), 선하증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p> <p>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lt;개정 2012.1.13&gt;</p> <p>1. 제7조제2항 각 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p> <p>2.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p> <p>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3.26&gt;</p> <p>④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21조(경유기간)</b>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22조(사고발생 신고)</b>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 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⑤ 국내 지역 경유를 승인하기 위한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gt;</p> <p><b>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b>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유기간 연장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3.26&gt;</p> <p>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유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3.26&gt;</p> <p><b>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b>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li> <li>2. 경유 승인번호</li> </ol>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② 제1항에 따른 도착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b>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b>제27조(소독·폐기 등 처분명령)</b>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li> <li>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li> </ol>		<p>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유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p> <p>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3.26&gt;</p> <p><b>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처분 기준)</b>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그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li> <li>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소독을 한 후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li> <li>3.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라 경유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                  ④ 제3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절 수출검역</b></p> <p><b>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b> ①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p>		<p>4.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p> <p><b>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b>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7.14&gt;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gt;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4.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검역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lt;개정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b> ① 수출 식물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이</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 검역)</b>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p> <p>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p>		<p>나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37조(수출 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등)</b>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식물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2.1.13&gt; [제목개정 2012.1.13]</p> <p><b>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 검역 요청 등)</b>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26&gt;</p> <p>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선박 입출항신고서 또는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신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p> <p><b>제29조(검역장소)</b>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b>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b>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p>		<p>27호의2서식의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26&gt;</p> <p>③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13] [중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6으로 이동 &lt;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인증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li> <li>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li> <li>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li> <li>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li> <li>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li> <li>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li> </ol> <p>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p> <p>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14]</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 국내검역</b></p> <p><b>제30조(국내검역)</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7.14&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방제</b></p> <p><b>제31조(방제)</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lt;개정 2011.7.14, 2011.11.14&gt;</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li> <li>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li> <li>3. 방제의 내용</li> <li>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li> </ol> <p><b>제31조의2(식물방제관)</b>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 [중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lt;2011.7.14&gt;]</p>		<p><b>제37조의3(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b></p> <p>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수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p> <p>③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p> <p>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p> <p>④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2.1.13]</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b>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p> <p>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b>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b>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 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p> <p>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p>	<p><b>제3조의2(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b>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분부장 1명을 둔다.</p> <p>②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p>	<p><b>제37조의4(식물방제관의 증표)</b>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2.1.13]</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1.11.14&gt;</p> <p>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분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li> <li>2.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지원</li> <li>3.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li> <li>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li> <li>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1.13]</p> <p><b>제3조의3(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b></p> <p>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31조의5(분포조사)</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li> <li>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li> <li>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의 예산·기술 지원</li> <li>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1.13]</p>	<p><b>제37조의5(분포조사)</b> ①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분포조사(이하 "분포조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고, 분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p> <p><b>제31조의6(역학조사)</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병해충 발생 지역 및 발생 면적 2. 병해충 발생 정도 또는 피해율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분포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분포조사는 병해충예찰·방제단에 소속된 사람,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분포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3]</p> <p><b>제37조의6(역학조사)</b>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2.1.13&gt; 1. 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의 정도 2. 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 경로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본조신설 2010.2.4] [제31조의2에서 이동 &lt;2011.7.14&gt;]</p> <p><b>제32조(방제계획)</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③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해충 예찰·방제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li> <li>2. 병해충 예찰·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⑤ 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3&gt;</p> <p>[본조신설 2010.8.3] [제37조의2에서 이동 &lt;2012.1.13&gt;]</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②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방제기본지침</p> <p>가. 방제의 기본방향</p> <p>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p> <p>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p> <p>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p> <p>2. 방제계획</p> <p>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p> <p>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p> <p>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p> <p>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p> <p>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7.14&gt;</p> <p><b>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b>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1.7.14&gt;</p>		<p><b>제37조의7(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b>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진흥청장: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li> <li>2. 산림청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li> <li>3. 시·도지사: 「농지법」에 따른 농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등 관할 행정구역</li> <li>4. 검역검사본부장: 공항·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출단지 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수입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li> </ol> <p>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육안조사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3]</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34조(보고의무)</b>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35조(공동 방제)</b> ①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군·자치구</li> <li>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li> <li>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li> </ol>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lt;신설 2011.7.14&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36조(방제명령의 내용)</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li> <li>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li> <li>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li> <li>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li> </ol>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b>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b> 농촌진흥청장,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37조(비용 부담)</b> 시·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lt;개정 2011.7.25&gt;</p> <p><b>제37조의2(발굴의 금지)</b>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p>	<p><b>제4조(비용 부담)</b>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제비(藥劑費)</li> <li>2. 방제기구 사용료</li> <li>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li> </ol>	<p><b>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b>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p> <p><b>제39조의2(발굴의 금지기간 등)</b> ① 법 제37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b>제38조(손실보상)</b>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p>	<p><b>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b>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배 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p>	<p>치하여야 한다.</p> <p>1. 매몰된 식물등과 그 병해충의 이름 2.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3.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p> <p>③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병해충의 확산 방지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굴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13]</p> <p><b>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b> ①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 2011.11.14&gt;</p> <p>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p> <p>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p> <p>4.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 등에 소독·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p> <p>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상금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13]</p>	<p>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중 시·도지사를 거치는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 서류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b>제41조</b> 삭제 &lt;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b>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b>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b> ① 법 제38조의 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 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li> <li>2.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방제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li> <li>3. 법 제36조에 따라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후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는 자</li> </ol> <p>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2.1.13]</p>	<p><b>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b>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양여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2.1.13&gt;</p> <p>③ 제2항에 따른 양여 결정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b></p> <p><b>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b>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p>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lt;신설 2011.7.14&gt;</p> <p>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1.7.14&gt;</p>		<p><b>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b>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등록신청하려는 열처리시설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2.10.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li> <li>2.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li> <li>3. 열처리시설별 명세(열처리시설 설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gt;</p> <p><b>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b>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b>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1.6.15, 2012.3.26, 2012.10.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li> <li>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li> <li>4. 삭제 &lt;2012.1.13&gt;</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급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6.15&gt;</p> <p><b>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b>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는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56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소독처리(HT) 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그 밖에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gt;</p> <p><b>제46조의2(준수사항 등)</b>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lt;개정 2012.10.31&gt;</li> <li>2.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크표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것 &lt;개정 2012.10.31&gt;</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b>제40조의2(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하지 않을 것</li> <li>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마크 표시를 제출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알릴 것 &lt;개정 2012.10.31&gt;</li> <li>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lt;개정 2012.10.31&gt;</li> </ol> <p>②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관련 단체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2.1.13]</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7.14]</p> <p><b>제40조의3(지위승계)</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li> <li>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li> <li>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p>		<p><b>제46조의3(지위승계)</b>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을 통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26, 2012.10.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li> <li>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나. 양도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li> <li>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검역검사본부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3.26, 2012.10.31&gt; [본조신설 2012.1.13]</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p> <p><b>제41조(등록취소 등)</b>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li> <li>2. 1년 이상营业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li>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li> </ol>		<p><b>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b>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p> <p>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 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보칙</b></p> <p><b>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p>		<p><b>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b> ① 법 제42조에 따라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li> <li>2. 농업인</li> <li>3. 식물류 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식물수출입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li> </ol> <p>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 등의 추천 또는 명예 식물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p><b>제43조(포상금)</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3조,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p>	<p><b>제5조(포상금의 지급)</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을 받아 식물검역 감시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③ 명예 식물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7조·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li> <li>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li> <li>3.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li> <li>4. 그 밖의 식물검역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li> </ol> <p>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명예 식물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⑤ 명예 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1.6.15, 2012.1.13&gt;</p> <p>[제목개정 2012.1.13]</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또는 검사를 받은 자 등을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b>제44조(책임 면제)</b>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lt;개정 2011.7.14&gt;</p> <p><b>제45조(시설 지원)</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b>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6조(권한의 위임)</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1.7.14&gt; [제목개정 2011.7.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li> <li>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li> <li>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li> <li>5.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li> <li>6.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이 영 제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손실보상 방법에 관한 고시</li> <li>7.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의 보조</li> <li>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li> <li>9.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li> <li>10.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고시</li> <li>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li> <li>3. 법 제7조의4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li> <li>4.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수입수량 결정 및 고시</li> <li>5.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인정</li> <li>6.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li> <li>7.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과 국내 식물에 대한 피해 여부 결정</li> <li>8.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p> <p>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p> <p>1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p> <p>1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p> <p>1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지정·고시</p> <p>13.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실시 및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고시</p> <p>14.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의 지정·고시</p> <p>15.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국제식물검역 인증원의 보고 요구 및 감독</p> <p>16.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의 지정·고시</p> <p>17.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p> <p>1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검역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벌칙</b></p> <p><b>제47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1.7.14&gt;</p> <p>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폐기, 그 밖</p>	<p>19.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p> <p>20.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p> <p>21.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역시설·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p> <p>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나.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검역관은 제외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p> <p>다.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전문개정 2012.1.13]</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8조를 위반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p> <p>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p> <p>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p> <p>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p> <p>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휴대하여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p> <p>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7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p> <p>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10.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p> <p>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12.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p> <p><b>제48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1.7.14&gt;</p> <p>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p> <p>3의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p> <p>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p> <p>8의2.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p> <p>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p> <p>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p> <p><b>제48조의2(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는 기피한 자</p> <p>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7.14]</p> <p><b>제48조의3(미수범)</b>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제8호·제8호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1.7.14]</p> <p><b>제49조(양벌규정)</b>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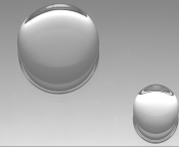
<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	<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	<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
<p><b>제50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li> <li>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li> <li>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li> <li>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li> <li>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li> <li>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ol>	<p><b>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3]</p> <p><b>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lt;개정 2012.1.13&gt;</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b> [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b>식물방역법 시행규칙</b>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li> <li>2.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li> <li>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li> <li>4.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li> <li>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14]</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법률 제11077호, 2011. 11.14&gt;</p> <p>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3983호, 2012.7.24&gt;</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생략</p> <p><b>제3조</b>(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315호, 2012.10.31&gt;</p> <p><b>제1조</b>(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0938호, 2011.7.25]</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3983호, 2012.7.24]</p>	<p style="text-align: center;">식물방역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5호, 2012.10.31]</p>
	<p>「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p> <p><b>제4조</b> 생략</p>	<p>②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검역장소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b>(검역장소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받은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로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p> <p><b>제4조</b>(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91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태료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때에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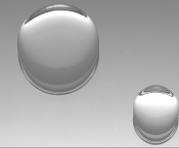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 1호			
1)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40
2)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	200	400
3)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4)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	200	400	
나. 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 1호	25	50	1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 1호	200	500	1,000

라.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 2호	10	30	90
마.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 3호			
1) 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을 수입하여 신고를 지체한 경우		10	30	90
2) 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신청을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바.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 4호	10	20	40
사.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 2호	100	200	400
아. 법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 2호			

1)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25	50	100
2)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3) 격리재배식물을 검사 종료 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500	750	1,000
자.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 3호	100	200	400
차.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 3호	500	750	1,000
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 4호	500	750	1,000
다. 법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 5호	100	200	300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 목 차

[별표 1]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 병해충 .....	97
[별표 2] 식물검역관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 .....	102
[별표 3]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 .....	102
[별표 4]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	104
[별표 5]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	105
[별표 6]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105
[별표 7] 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	106
[별표 8] 소독·폐기의 장소 .....	106
[별표 8의2]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 .....	107
[별표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	107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	108



[별표 1] <개정 2012.1.13>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1. 벼·왕겨 벗짚과 그 가공품(껍질을 벗긴 쌀과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낻는 제외한다)	-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	- 벼줄기선충 [ <i>Ditylenchus angustus</i> ] - 벼이삭미이라병 [ <i>Balansia oryzae-sativae</i> ]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파인애플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품목별 수입허용지역	- 지중해과실파리 [ <i>Ceratitis capitata</i> ] - <i>Ceratitis quinaria</i> - <i>Ceratitis rosa</i> - <i>Bactrocera aquilonis</i> - <i>Bactrocera carambolae</i> - <i>Bactrocera correcta</i> - 꿀과실파리류 [ <i>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i> ] - <i>Bactrocera halfordiae</i> - <i>Bactrocera jarvisi</i> - <i>Bactrocera latifrons</i> - <i>Bactrocera neohumeralis</i> - <i>Bactrocera papayae</i> - <i>Bactrocera tau</i> - <i>Bactrocera trivialis</i> - 퀴슬랜드과실파리 [ <i>Bactrocera tryoni</i> ] - <i>Bactrocera tuberculata</i> - 오이과실파리 [ <i>Bactrocera cucurbitae</i> ] - 일본과실파리 [ <i>Bactrocera tsuneonis</i> ] - <i>Bactrocera umbrosa</i> - <i>Bactrocera zonata</i> - 남미과실파리 [ <i>Anastrepha fraterculus</i> ]	
	감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포도		[미국] 하와이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참다래 ( <i>Actinidia chinensis</i> , <i>Actinidia deliciosa</i> )		[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다래 ( <i>Actinidia arguta</i> )		[뉴질랜드] 전 지역
	자몽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 지역

감귤레몬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 멕시코과실파리 [ <i>Anastrepha ludens</i> ] - 카리브과실파리 [ <i>Anastrepha suspensa</i> ] - <i>Anastrepha serpentina</i> - <i>Anastrepha obliqua</i> - 유럽양벚과실파리 [ <i>Rhagoletis cerasi</i> ] - <i>Rhagoletis cingulata</i> - <i>Rhagoletis completa</i> - 서부양벚과실파리 [ <i>Rhagoletis indifferens</i> ] - <i>Rhagoletis fausta</i> - 사과과실파리 [ <i>Rhagoletis pomonella</i> ] - <i>Rhagoletis suavis</i> - 고추과실파리 [ <i>Zonosemata electa</i> ] - <i>Anastrepha distincta</i> - <i>Anastrepha pseudoparallela</i> - <i>Anastrepha striata</i> - <i>Bactrocera cucumis</i> - <i>Bactrocera fraunfeldi</i> - <i>Bactrocera kraussi</i> - <i>Bactrocera murrayi</i> - <i>Bactrocera opiliae</i> - 코드린나방[ <i>Cydia pomonella</i> ] - 자두애기잎말이나방 [ <i>Cydia funebrana</i> ] - 만주애기잎말이나방 [ <i>Grapholita inopinata</i> ] -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 <i>Grapholita prunivora</i> ] - <i>Grapholita prunivorana</i>
라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유자	[일본] 규슈와 류큐열도를 제외한 전 지역	
단감호박	[일본]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두리안	[태국] 전 지역	
양벚토마토 딸기	[일본] 전 지역	
아보카도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석류	[이란] Sistan 및 Baluchistan Province를 제외한 전 지역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	
월귤	[네팔] 전 지역 [인도네시아] 전 지역	

	<p>멜론</p> <p>[미국]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 전 지역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p>	<p>- 북송아뿔나방 [<i>Anarsia lineatella</i>] - 자두바구미 [<i>Conotrachelus nenuphar</i>] - <i>Cryptophlebia leucotreta</i> - <i>Carpomya parvalina</i></p>
	<p>참외</p> <p>[일본] 전 지역 [우즈베키스탄] 전 지역</p>	
3. 호두나무의 열매 [탈각(脫殼)된 것은 제외한다]	<p>- 아시아: 레바논·미얀마·시리아·아프가니스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인도·중국·터키·파키스탄</p> <p>- 유럽: 전 지역</p> <p>- 아프리카: 전 지역</p> <p>-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멕시코</p> <p>-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페루</p> <p>-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p> <p>- 러시아·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벨로루시·몰도바·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그루지야·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p>	<p>- 코드린나방 [<i>Cydia pomonella</i>]</p>
4. 감자·토마토 종자	<p>- 아시아: 아프가니스탄·중국[허베이(河北)·헤이룽장(黑龍江)·장쑤(江蘇)·칭하이(青海)성만 해당한다]·인도(히마찰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지역만 해당한다)</p>	<p>- 감자갈쭉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p>

	<p>- 유럽: 벨로루시·독일·폴란드 러시아·영국(잉글랜드·웨일즈 지역만 해당한다)</p> <p>- 아프리카: 이집트·나이지리아</p> <p>- 북아메리카: 미국(켄사스 메인 메릴랜드·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욕·노스다코타·오하이오·위스콘신·와이오밍주만 해당한다)</p> <p>-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p> <p>-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베네수엘라</p> <p>- 오세아니아: 뉴질랜드</p>	
5. 고구마속식물 나팔꽃속식물 페꽃속식물 파속식물·새삼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카사바 생식물의 지하부	<p>- 아시아: 라오스·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베트남·브루나이·미얀마·싱가포르·스리랑카·인도네시아·인도·중국·대만·캄보디아·태국·파키스탄·필리핀·일본(북위 30° 이남의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및 오가사와라제도만 해당한다)·몰디브·코코스섬 크리스마스섬·페스카도레스제도·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p> <p>- 아프리카: 전 지역</p> <p>- 북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서인도 제도</p> <p>-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베네수엘라·브라질·수리남·페루·프랑스령 기이아나·파라과이</p> <p>-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파푸아뉴기니·미크로네시아·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 하와이제도</p>	<p>- 개미바구미 [<i>Cylas formicarius</i>] - 고구마바구미 [<i>Euscepes postfasciatus</i>]</p>

<p>6. 보리속(<i>Hordeum</i> spp), 밀속(<i>Triticum</i> spp.), 호밀속, 개밀속 및 라이밀속(<i>Triticosecale</i> spp.) 식물의 경엽과 그 가공품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p>	<p>- 아시아: 이라크·이스라엘 이란·터키·시리아 - 유럽: 전 지역 - 아프리카: 알제리·모로코 튀니지 - 북아메리카: 전 지역 (서인도 제도는 제외한다)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뉴질랜드 - 그루지야·라트비아·카자흐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p>	<p>- 헤시안파리 [<i>Mayetiola destructor</i>]</p>						
<p>7.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60 555 488 735"> <p>품목별</p> </td> <td data-bbox="488 555 748 735"> <p>수입 허용지역</p> </td> </tr> <tr> <td data-bbox="360 735 488 986"> <p>가지과 식물의 생경엽</p> </td> <td data-bbox="488 735 748 986"> <p>[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 지역</p> </td> </tr> <tr> <td data-bbox="360 986 488 1436"> <p>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p> </td> <td data-bbox="488 986 748 1436"> <p>[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 지역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뉴욕주 유타주·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몬태나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북다코타주·캔사스주·와이오밍주·델라웨어주·오클라호마주·남다코타주·네바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 지역</p> </td> </tr> </table>	<p>품목별</p>	<p>수입 허용지역</p>	<p>가지과 식물의 생경엽</p>	<p>[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 지역</p>	<p>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p>	<p>[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 지역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뉴욕주 유타주·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몬태나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북다코타주·캔사스주·와이오밍주·델라웨어주·오클라호마주·남다코타주·네바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 지역</p>	<p>- 감자암종병 [<i>Synchytrium endobioticum</i>] - 감자갈쭉병 [<i>Potato spindle tuber viroid</i>] - 감자씨스트선충 [<i>Globodera rostochiensis</i>] - 감자흰씨스트선충 [<i>Globodera pallida</i>] - 콜로라도잎벌레 [<i>Leptinotarsa decemlineata</i>] - 담배노균병 [<i>Peronospora tabacina</i>]</p>
<p>품목별</p>	<p>수입 허용지역</p>							
<p>가지과 식물의 생경엽</p>	<p>[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 지역</p>							
<p>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식물의 지하부</p>	<p>[일본] 홋카이도 규슈섬을 제외한 전 지역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뉴욕주 유타주·네브래스카주·캘리포니아주·몬태나주·애리조나주·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북다코타주·캔사스주·와이오밍주·델라웨어주·오클라호마주·남다코타주·네바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전 지역</p>							

<p>8.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p>	<p>- 아시아: 대만·아랍에미리트·레바논·미얀마·시리아·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터키·예멘 - 유럽: 전 지역 - 아프리카: 리비아·모로코·알제리·이집트·튀니지 - 북아메리카: 과테말라·멕시코·미국·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자메이카·캐나다·쿠바·아이티·온두라스·니카라과·푸에르토리코·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우루과이·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트레일리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우크라이나·몰도바·리투아니아·그루지야</p>	<p>- 담배노균병 [<i>Peronospora tabacina</i>]</p>
<p>9. 배나무아과 복숭아속식물 및 나무딸기속식물의 묘목 접수·삼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과 생과실(복숭아속 식물은 제외한다)</p>	<p>- 세계 전 지역(일본 및 대만은 제외한다)</p>	<p>- 배화상병 [<i>Erwinia amylovora</i>] - 사과빛자루병[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 자두곰보병 [<i>Plum pox virus</i>]</p>

<p>10. Rutaceae( 운향과) ·<i>Cuscuta</i> spp. 및 <i>Artocarpus hetero-phyllus</i>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p>	<p>- 아시아: 중국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미얀마·태국·네팔 예멘 부탄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일본 (오끼나와현의 북위 27° 58' 이남지역 및 키카이섬만 해당한다)·방글라데시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스리랑카·이란 - 아프리카: 모리셔스 레위니옹 코모로·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짐바브웨 부룬디 카메룬·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말라위·르완다 소말리아 튀니지 - 북아메리카: 미국(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조지아주·Virgin Islands만 해당한다), 멕시코 (Yucatan주·Nayarit주·Jalisco주·Quintana Roo주, Campeche·Colima주, Sinaloa주·Michoacan주만 해당한다),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Los Chiles·San Carlos·Guatuso·Upala·La Cruz지역만 해당한다) - 남아메리카: 브라질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파푸아뉴기니·동티모르</p>	<p>-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i>Diaphorina citri</i>, <i>Trioza erytreae</i>]</p>	<p>12. 아보카도·파인애플 여지·<i>Indigofera hirsuta</i>· 테다소나무·<i>Pinus eliottii</i>·강 낭콩·오크라·수박·무·여주· 고추·토마토·호박·멜론·부 추·치자·칸나·차나무·커피 생강·알과과·후추·고구마 사탕수수·대두·옥수수·땅콩 (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 는 제외한다)·빈랑·코코넛야 자·<i>Curcuma longa</i>·당근·까 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과 초 속 식물·운향과 식 물·<i>Calathea</i> spp.·안스릅속 식물·근대속식물·<i>Dioscorea</i> spp.·배나무속 식 물·<i>Philodendron</i>속·<i>Maranta</i> 속·<i>Stromanthe</i>속·<i>Ctenonthe</i> 속·<i>Persea</i>속·<i>Strelitzia</i>속·차스민 속·<i>Rhapis</i>속·<i>Heliconia</i>속의 생 식물의 지하부</p>	<p>- 북아메리카: 미국·캐나다·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전 지역 - 남아메리카: 전 지역 - 아프리카: 전 지역 - 아시아: 인도·인도네시아·말레 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 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 레바논·오만·싱가포르· 예멘 - 유럽: 벨기에·프랑스·독일·포 르투갈·이탈리아·네덜란드·폴 란드·슬로베니아 -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 역: 오스트레일리아·타스 마니아주는 제외한다)·팔 라우·괌·미크로네시아·파 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 폴리네시아·피지·하와이 제도</p>	<p>- 감귤뿌리썩이선충 [<i>Radopholus citroph ilus</i>]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i>Radopholus similis</i>]</p>
<p>11. 포도의 묘목·접수 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p>	<p>- 아시아: 대만 - 유럽: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 아티아·슬로베니아·스페인 - 북·중·남아메리카: 미국·캐나다 멕시코·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베네 수엘라·파라과이·브라질</p>	<p>- 포도황화병 [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 포도피어슨병 [<i>Xylella fastidiosa</i>]</p>	<p>13.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 식물·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목재류 (검역검사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p>	<p>- 아시아: 일본·중국·대만·베 트남 - 북아메리카: 미국·캐나다 멕시코 - 유럽: 포르투갈</p>	<p>- 소나무재선충 [<i>Bursaphelenchus xylophilus</i>]과 그 분포 지역의 매개충 [<i>Monochamus alternatus</i>, <i>Monochamus carolinensis</i>] - 소나무종유석병 [<i>Granatium adesprioides</i>]</p>

<p>14. <i>Acer macrophyllum</i>, <i>Aesculus californica</i>, <i>Arbutus menziesii</i>, <i>Arctostaphylos manzanita</i>, <i>Calluna vulgaris</i>, <i>Camellia</i> spp., <i>Fraxinus excelsior</i>, <i>Griselinia littoralis</i>, <i>Hamelis virginiana</i>, <i>Heteromeles arbutifolia</i>, <i>Lithocarpus densiflorus</i>, <i>Lonicera hispidula</i>, <i>Maianthemum racemosum</i>(<i>Smilacina racemosa</i>), <i>Photinia fraseri</i>, <i>Pieris formosa</i>, <i>Pieris formosa</i> × <i>P. japonica</i>, <i>P. floribunda</i> × <i>P. japonica</i>, <i>Pieris japonica</i>, <i>Pseudotsuga menziesii</i> var. <i>menziesii</i>, <i>Quercus</i> spp., <i>Frangula californica</i>, <i>Rhododendron</i> spp., <i>Rosa gymnocarpa</i>, <i>Sequoia sempervirens</i>, <i>Trientalis latifolia</i>, <i>Umbellularia californica</i>, <i>Vaccinium ovatum</i>, <i>Viburnum</i> spp., <i>Acer pseudo-platanus</i>, <i>Aesculus hippocastanum</i>, <i>Adiantum aleuticum</i>, <i>Adiantum jordanii</i>, <i>Castanea sativa</i>, <i>Fagus sylvatica</i>, <i>Frangula purshiana</i>(= <i>Rhamnus purshiana</i>), <i>Kalmia</i> spp., <i>Laurus nobilis</i>, <i>Magnolia doltsopa</i>, <i>Parrotia persica</i>, <i>Pieris</i> spp., <i>Salix caprea</i>, <i>Syringa vulgaris</i>, <i>Taxus baccata</i>의 묘목(대목 포함)·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 (종자는 제외한다)과 수피가 붙어 있는 목재류</p>	<p>- 유럽: 독일·네덜란드·영국·스페인·벨기에·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슬로베니아·폴란드·스위스</p> <p>- 북아메리카: 미국 (캘리포니아주 Marin·Monterey·Napa·San Mateo·Santa Clara·Santa Cruz·Sonoma·Alameda·Solano·Mendocino·Humboldt·Contra Costa·Lake·San Francisco 카운티, 오레곤주 Curry 카운티 및 뉴욕주 Nassau 카운티만 해당한다)</p>	<p>- 참나무역병 [<i>Phytophthora ramorum</i>]</p>
---	---	--

※ 비고

1. 위 표의 수입 금지 식물 중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위 표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금지지역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2.3.26>

식물검역관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관련)

1. 전형시험의 방법

- 가. 전형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나.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식물 감정 및 검역장비 조작으로 한다.
- 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전형시험을 볼 때만 그 시험을 면제한다.

2. 전형시험의 출제 범위

- 가. 필기시험: 식물방역 관계 법령(고시 및 예규를 포함한다), 병해충 압초를 포함한다) 관련 지식
- 나. 실기시험: 병해충 및 식물표본의 식물 감정 또는 사진 감정, 검역장비 조작

3. 전형시험의 절차

- 가. 검역검사본부장은 전형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시험 실시 5월 전까지 전형시험의 일시와 장소 등 전형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형시험 실시 30일전까지 전형시험에 응시할 대상자의 명단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4. 합격의 결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의 결정은 각 시험마다 60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2.10.31>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

1. 제식용

식물의 종류	검역 수량
가. 감귤류·사과·배·호도·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전량
나. 아보카도·양다래·파인애플·망고 등의 열대·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1)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500주 2,000주~5,000주 미만: 750주 5,000주 이상: 1,000주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kg미만: 50% 이상(최대 5kg 미만) 10kg~20kg 미만: 5kg 20kg~50kg 미만: 7.5kg 50kg 이상: 10kg
다. 카네이션·국화·장미·선인장·소철·야자·라일락·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 소나무·낙엽송 등의 삼림식물,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	1) 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2,000주 미만: 30% 이상(최대 600주 미만) 2,000주~1만주 미만: 600주 1만주~5만주 미만: 900주 5만주 이상: 1,200주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kg 미만: 30% 이상(최대 60kg 미만) 200kg~1톤 미만: 60kg 1톤~5톤 미만: 90kg 5톤 이상: 120kg
라. 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	1톤 미만: 50% 이상(최대 500kg 미만) 1톤~20톤미만: 500kg 20톤 이상: 750kg

<p>마. 백합·튤립·수선·히아신스·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p>	<p>1) 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5,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1,000개 미만)  5,000개~5만개 미만: 1,000개  5만개~10만개 미만: 1,250개  10만개 이상: 1,500개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자구(子球, 새끼 알뿌리)만 해당한다]  100kg 미만: 20% 이상(최대 20kg 미만)  0.1톤~1톤 미만: 20kg  1톤~20톤: 25kg  20톤 이상: 30kg</p>
<p>바. 마늘·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p>	<p>20톤 미만: 5% 이상(최대 1,0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0kg  100톤~500톤 미만: 1,200kg  500톤 이상: 1,400kg</p>
<p>사. 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조직배양 식물과 그 부분</p>	<p>500개 미만: 3% 이상(최대 15개 미만)  500개~1,000개 미만: 15개  1,000개~5,000개 미만: 30개  5,000개 이상: 45개</p>
<p>아. 벼·보리·옥수수·조·수수·콩·팥·완두콩 등 곡류 종자</p>	<p>0.1톤 미만: 20% 이상(최대 20kg 미만)  0.1톤~5톤 미만: 20kg  5톤~50톤 미만: 30kg  50톤 이상: 40kg</p>
<p>자. 곡류 종자 외의 채소·화초·수목류·목초류 등의 종자</p>	<p>0.1톤 미만: 10% 이상(최대 10kg 미만)  0.1톤~5톤 미만: 10kg  5톤~50톤 미만: 15kg  50톤 이상: 20kg</p>

## 2. 비제식용

식물의 종류	검역 수량
<p>가. 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折枝)</p>	<p>3,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600개 미만)  3,000개~15,000개 미만: 600개  15,000개~3만개 미만: 900개  3만개 이상: 1,200개</p>
<p>나. 밀·콩·녹두·동부·땅콩·아주까리·아마인·코푸라·벼·보리·수수·조·옥수수 등으로서 유료·양조·제분·비료·사료·식량에 쓰이는 식물</p>	<p>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kg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kg  500톤~2,000톤 미만: 150kg  2,000톤~1만톤 미만: 200kg  1만톤~2만톤 미만: 250kg  2만톤 이상: 300kg</p>

<p>다. 아마·삼·아바카 등의 조섬유, 짚·가마니·새끼 등의 짚제품, 후추·커피원두·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 한약재, 건조과실, 건조채소, 냉동과실, 냉동채소 그 밖의 잡화류</p>	<p>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kg  100톤~500톤 미만: 150kg  500톤 이상: 200kg</p>
<p>라. 생과실, 생채소의 열매·잎·뿌리, 감자, 고구마, 마</p>	<p>20톤 미만: 2% 이상(최대 4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 400kg  100톤~500톤 미만: 500kg  500톤 이상: 600kg</p>
<p>마. 목재·죽재</p>	<p>종류별로 2%</p>
<p>바. 우드칩·톱밥</p>	<p>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kg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kg  500톤~2,000톤 미만: 150kg  2,000톤~1만톤 미만: 200kg  1만톤~2만톤 미만: 250kg  2만톤 이상: 300kg</p>
<p>사. 법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수입되는 금지품</p>	<p>전량</p>

### ※ 비고

- 위 기준에 없는 식물은 유사한 식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전량을 검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검역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 검역할 수량에 대한 현장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식물 등의 상태로 보아 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 수출국이나 도착지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식물 및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은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역할 수량을 줄일 수 있다.
- 포대·상자 등에 포장된 식물 중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식물은 다음의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른 포장에서 위 표의 검역할 수량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한다.
  - 1개 포장의 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추출수를 2분의 1로 감하여 추출할 수 있다.
  -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라 해당 포장에서 추출한 수량이 검역할 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과 동등한 수량을 추출하여야 한다.

검역표본의 추출기준

포장의 수	표본추출 포장수
1~6	전체
7~14	6
15~24	7
25~34	8
35~44	9
45~54	10
55~64	11
65~74	12
75~84	13
85~94	14
95~104	15
105~114	16
115~124	17
125~134	18
135~144	19
145~154	20
155~164	21
165~174	22
175~184	23
185~194	24
195~204	25
205~214	26
215~224	27
225~234	28
235~244	29
245 이상	30 이상

[별표 4] <개정 2012.10.31>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제20조제1항 관련)

-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제11조제3호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륙 컨테이너 기지
  -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박람회장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한 장소
-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 외의 검역장소에는 검사대가 갖추어져 있고 검역장소가 창고인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면적 6㎡ 이상의 검역실(제1호마목에 따른 국제박람회장과 냉동창고 목재류만 반입되는 창고 및 목재야적장은 제외한다)
  - 검역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는 식물검역 전용구역 컨테이너의 식물을 꺼내어 검역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식물검역전용구역의 면적기준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검역장소에는 검역 시 안전을 도모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재식용(栽植用)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외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입고 시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사람을 식물검역관리인으로 두되, 식물검역관리인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검역장소의 지반은 훈증 소독 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거나 찰흙 등으로 단단하고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고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의 외곽에는 검역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원목을 검역하는 장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검역장소의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검역 샘플의 채취, 소독작업 및 현장검역에 장애가 없도록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3. 원목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때부터 소독이 끝난 원목과 소독이 끝나지 아니한 원목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식물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장치하되 수입일, 수입자, 화물관리번호, 품명 및 수량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에 넣어져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물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 3℃ 이하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중인 식물 및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되어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
  - 나.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 다. 그 밖에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검역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원목의 검역장소는 수시로 지반과 배수구를 정비하고 나무껍질 등 잔재물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藏置)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물품은 제외한다).
8. 검역장소지정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의 규격과 원목의 구분 적재 방법 및 식물 잔재물의 소독방법 등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기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 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 2호				
1) 검사대와 조명시설의 훼손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관리책임자 또는 식물검역관리인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3) 검역장소 지정표지판 미설치와 화물표찰 미부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4)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장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별표 5 제5호에 따른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6)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된 식물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기능정지 1개월	기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 3호				
1) 1년 이상 검역장소에 식물등을 장치하지 않은 경우		기능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

[별표 7]

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1. 소독기간

가.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0일간
- 2)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간
- 3)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나. 목재류 및 죽재류

-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5일간
- 2)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하역된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다. 경유 물품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5일간

2. 폐기·반송 및 반출기간

명령일부터 20일간. 다만,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부터 10일간

[별표 8] <개정 2012.1.13>

소독·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

1. 소독 장소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한 장소

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독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다.

2. 폐기 장소

가. 법 제7조의3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휴대, 우편 및 특급택송물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로 폐기하는 경우
- 2)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 3)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별표 8의2] <신설 2012.1.13>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

대상	발굴 금지기간
-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씨스트선충류 및 뿌리혹선충류를 제외한 해충	1년
- 진균 - 균류 유사체	3년
- 감자암종병, Synchytrium 속 진균	20년

[별표 9] <개정 2012.1.13>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열처리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가. 목재류 열처리업 또는 목재류 가공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포장기사 또는 포장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다. 목공예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라. 목재가공·목질재료·펄프제지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마.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바.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 수출입식물 검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수 량	규 격
가. 열처리시설	구조물 1대 이상	○내용적 20m <sup>3</sup> 이상 ○벽, 천장면은 철강판재일 것 ○바닥은 철강판재 또는 콘크리트일 것
나. 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 시설 내의 온도 측정장치 (온도감지기 포함)	1대 이상	○국가인증교정기관의 교정을 받고 교정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것 ○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
다. 온도 자동기록장치	1대 이상	○자동기록 및 출력이 가능한 것
라. 고열 발생장치	1대 이상	○목재중심부 온도를 56℃ 이상, 30분 이상처리가 가능한 것
마. 공기순환 장치	1대 이상	○시설 내 열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송풍 및 교반성능을 가진 것
바. 소독처리 마크	1대 이상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를 것

[별표 10] <개정 2012.10.3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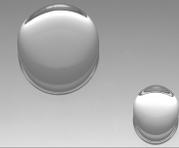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1호	등록취소	-	-
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2호	등록취소		
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5호			
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 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를 제출하지 않고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것을 알리지 않고 폐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6호	등록취소		
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7호	등록취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식물검역공무원증 .....	113
[별지 제2호서식]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	113
[별지 제3호서식] 수입허가증명서 .....	114
[별지 제4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	114
[별지 제5호서식] 수출(입) 검역대상 식물 명세서 .....	115
[별지 제6호서식] 선상검역 결과증명서 .....	116
[별지 제6호의2서식] 목재포장재 검사신고서 .....	116
[별지 제7호서식] 격리재배명령서 .....	117
[별지 제8호서식] 검역장소 지정신청서 .....	117
[별지 제9호서식] 검역장소지정서 .....	118
[별지 제10호서식]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 .....	118
[별지 제11호서식] (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	119
[별지 제12호서식] 처분 증명서 .....	119
[별지 제13호서식] 소독·폐기비용 납부통지서 .....	120
[별지 제14호서식] 소독·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 .....	120
[별지 제15호서식] 소독·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 .....	121
[별지 제16호서식] 수입 식물 검역 합격증명서 .....	122
[별지 제17호서식] 합격증인 .....	122
[별지 제18호서식]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	123
[별지 제19호서식]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 .....	124
[별지 제20호서식] 국내지역 경유승인서 .....	124

[별지 제21호서식]	경유기간 연장신청서 .....	125
[별지 제22호서식]	경유기간 연장승인서 .....	125
[별지 제23호서식]	경유물품 도착신고서 .....	126
[별지 제24호서식]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 .....	127
[별지 제25호서식]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	127
[별지 제26호서식]	PHYTOSANITARY CERTIFICATE .....	128
[별지 제27호서식]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 .....	129
[별지 제27호의2서식]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 .....	129
[별지 제27호의3서식]	AGM 무감염증명서 .....	130
[별지 제27호의4서식]	식물방제관공무원증 .....	130
[별지 제27호의5서식]	역학조사반원증 .....	131
[별지 제28호서식]	긴급 방제명령서 .....	131
[별지 제29호서식]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	132
[별지 제30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132
[별지 제31호서식]	방제용 약제 양여신청서 .....	133
[별지 제32호서식]	방제용 약제 양여통지서 .....	133
[별지 제33호서식]	수령증 .....	134
[별지 제34호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 .....	134
[별지 제35호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	135
[별지 제36호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 .....	135
[별지 제37호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136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 .....	136

(앞쪽)

제 호

식물검역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식물검역공무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식물검역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직인

-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보 내 는 사 람	성 명	
	주 소	
받 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품 목 명		학 명
수 량		수 송 방 법
채 취 국 가(산지)		경유국가 및 지역
수 입 목 적		포장 상태 및 개수
발 송 예 정 일		수 입 예 정 일
수입 후 관리장소		수 입 국 가
수입 후 관리방법		이 용 기 간
이용 후 처리방법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1부 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설 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심사	▶	허가증명서 발급
신청인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210mm × 297mm [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31>

제 호 Certificate No.			
<b>선상검역 결과증명서</b> <b>Prelimin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Imported Shipments</b>			
선박 회사명 Shipping company	수 입 자 Importer		
선(기)명 Conveyance	입항일 Date of arrival		
정박장소 Anchorage	선 적 항 Loading port		
품 목 명 Item	원 산 지 Origin of production		
수 량 Quantity	검역일 Inspection date		
검역결과 Inspection results	입 회 자 Attendant	(서명 또는 인)	
	조치사항 Actions to be taken		
<p>위의 화물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선상검역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ment described above has been inspected preliminarily on boar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2-4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17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p> <p>○○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p>			
<p>※ 이 증은 선상검역 결과에 대한 증명서이므로 지체 없이 위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p> <p>This certificate has been issued for the approval of unloading. Consequently, this shipment shall be subjected to the plant quarantine import inspection after unloading, without delay.</p>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2.10.31>

### 목재포장재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기관	처리기간	10일
수입자 (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출자 (보내는 자)	성 명			상 호
	주 소			
운송형태 (운송수단)	선(기)명			입항일
선적항	수출국			국내 도착항
B/L번호			화물관리번호	
화물명	목재포장재 품목 수	단위	총 목재포장재 수량	
목재포장재 품목명	단위	수 량	포장재의 상태	
			미소독	<input type="checkbox"/> 미검역 <input type="checkbox"/> 수피부착 <input type="checkbox"/>
			미소독	<input type="checkbox"/> 미검역 <input type="checkbox"/> 수피부착 <input type="checkbox"/>
			미소독	<input type="checkbox"/> 미검역 <input type="checkbox"/> 수피부착 <input type="checkbox"/>
			미소독	<input type="checkbox"/> 미검역 <input type="checkbox"/> 수피부착 <input type="checkbox"/>
검사 희망일시	검사(반입) 장소			
신고인 요구사항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b>작성 방법</b>				
1. 신고인은 굵은 선 안을 적지 않습니다.				
2. "포장재의 상태"란에는 해당 사항 <input type="checkbox"/> 에 √표합니다.				
<b>처리 절차</b>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심사	현장 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결재	합격
				증명서 발급
			불합격	불합격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b>제 호</b>				
<b>격리재배명령서</b>				
※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격리재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명자	[ ]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격 리 재 배 지		품 목 명	수 량	격리재배 기간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재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b>격리재배 조건</b>				
1.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세관이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보관 장소를 포함합니다)로 옮겨야 합니다. 2. 격리재배시설의 보안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검역종료 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옮겨서는 아니 됩니다.				
<b>유 의 사 항</b>				
1. 위의 격리재배조건을 위반한 자(수입자·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 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3. "소유자"는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 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검역장소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식물검역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검역장소 명	소재지		
검역장소 유형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야적장(CY) <input type="checkbox"/> 야적장 <input type="checkbox"/> 창고 <input type="checkbox"/> 창고+야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면 적(㎡)	소유(㎡)	임대(㎡)	
식물 검역 전용 구역 면적(㎡)			
장치 대상 품목			
부두·공항과의 거리(m)	산지로부터의 거리(m)		
지반 상태			
검사대 수			
조명시설 현황	○ 식물장치구역: lux		○ 검사대: lux

「식물방역법」 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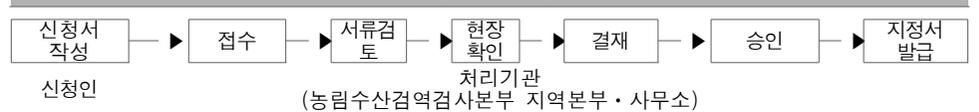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검역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No.			
<b>( [ ]소독, [ ]폐기, [ ]반송, [ ]반출, [ ]기타) 명령서</b> <b>Order for disinfection · destruction · return or taking out</b>			
수입자 Importer	성 명 Name	상 호 Company	
	주 소 Address		
수출자 Exporter	성 명 Name	상 호 Company	
	주 소 Address		
품 목 명 Item		수 량 Quantity	비 고 Remarks
물품 소재지 Location of consignment			
실시 장소 Point of enforcement			
실시 기간 Period of enforcement			
실시 방법 Method of enforcement			
실시 사유 Reason of enforcement			
실시 참관 Presence of enforcement		소독 또는 폐기는 식물검역관 참관 하에 실시 Disinfection or destruction should be executed in the presence of plant quarantine officer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폐기·반송·반출·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I hereby order you to (disinfect, destruct, return or take out)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3)-2, 12(2)-3, 16-1 to 16-3 and 27-1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23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 (Month)                  일(Day)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유 의 사 항 Remarks			
1.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시까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The consignments including in-transit ordered for disinfection, destruction, destruction, return to the origin or taking out must be stored in freight containers or closed cases, or kept apart from other consignments and covered with plastic etc. until the consignments are disinfected, destructed, returned or taken out, to prevent spread of any pests from the consignments.			
2.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 In case of movement of the consignments for disinfection, destruction, return to the origin or taking out, the consignments must be moved any freight containers or closed cases or covered with plastic etc. to prevent spread of any pests from the consignments.			
3. 폐기대상품의 경우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폐기대상품"임을 표기할 것 The consignments subject to destruction should have a sign of "The consignment subject to destruction" on the surface according to the methods gazet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No.			
<b>처분 증명서</b> <b>Certificate for results of disposal</b>			
수입자 Importer	성 명 Name	상 호 Company	
	주 소 Address		
수출자 Exporter	성 명 Name	상 호 Company	
	주 소 Address		
운 송 수 단 Means of conveyance		선(기)명 Name of vessel or aircraft	
품 목 명 Item		수 량 Quantity	비 고 Remarks
처분일 Date of disposal		처분 방법 Disposal method	
처분 사유 Reason of disposal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item has been disposed as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3)-2, 12(2)-3, 16-1 to 16-4, 27-1 and 27-2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27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 (Month)                  일(Day)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Plant Quarantine Officer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0.31>

제 호  <b>소독 · 폐기비용 납부통지서</b>  [ ] 소독 [ ] 폐기			
청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청구 금액			
청구 사유			
산출 근거			
「식물방역법」 제16조제5항과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 ]소독·[ ]폐기에 든 비용을 붙임의 소독·폐기비용 납부고지서와 같이 청구하오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0.31>

(제1쪽)

[ ]소독·[ ]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	20 . . .
납부자 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수입징수관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 항 목
청구 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청구 근거	「식물방역법」 제16조제6항과 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170mm×105mm(인쇄용지 70g/㎡)

(제2쪽)

[ ]소독·[ ]폐기비용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	20 . . .
납부자 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수입징수관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 항 목
청구 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청구 근거	「식물방역법」 제16조제6항과 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점·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0.31>

제 호  <b>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b>			
수입자	성 명		상 호
	주 소		
수출자	성 명		상 호
	주 소		
품 목 명		수 량	비 고
적재선(기)명		수 송 방 법	
검 역 일		소 독 연월일	
위 식물은 「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수입 검역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이 증명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규제병해충이 없다는 사실 확인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13>

<b>합 격 증 인</b>	
1. 규격 가. 바깥지름: 4.0cm 나. 안지름: 2.8cm 다.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간격: 0.6cm 라. PASSED의 폭: 0.8cm	2. 활자의 크기와 종류 가. PASSED: 볼드체 14pt 대문자 나.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및 Republic of Korea: 명조체 9pt 대문자 다.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및 Republic of Korea 사이는 ☆표로 구분
3. 기재방법 가. 내-상단:    년    월    일을 기재 나. 내-하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 표시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Application for inspection of transit shipments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Period should be completed	5일 Five days
------	-----	------------------------------------	-----------------

소유자 Possesso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전화번호(Tel.):]
------------------	-------------------------------------	---------------

운송인 Trans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Date of birth or passport No.	[전화번호(Tel.):]
--------------------	-------------------------------------	---	---------------

수하인 Consignee	성명 Name 상호 Company 주소 Address	
------------------	-------------------------------------	--

출발지 Departure Point	품목 수 No. of item	수출국 Exporting country	수입국 Importing country	도착지 Arrival point	수송방법 Transportation method	
					Railway 1	Land route 2

품목명 Item	단위 Unit	수량 Quantity	화물관리번호 Control No. of freight
-------------	------------	----------------	----------------------------------

B/L No. 차량 국적 Nationality of vehicle	Container No. 봉인번호 (Seal no.)	
차량 종류 Kind of vehicle	검역 희망일시 Desired date and time of inspection	
차량 번호 Plate No. of vehicle	검역 희망장소 Desired inspection place	

「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유승인을 신청합니다.

I hereby make an application for the inspection of the shipments order to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0-2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0-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 · 사무소장 귀하

To : Chief of ○○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첨부서류 (Attachment)	1. 적하목록·선하증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A copy of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shipments is being transited.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Details of transit shipments(In case of more than 2 items)	수수료 (Fees) 없음 (None)
----------------------	---	-------------------------------

210mm×297mm [백상지 80g/㎡]

검역사항 및 검역결과 조치	주무	과장	소장	결재

품 목 명	품목분류번호(HS)	단 위	수 량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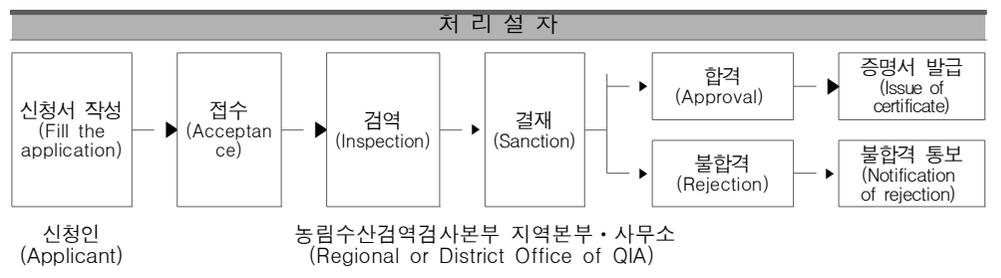
검역일자 연 월 일	안전조치 이행 여부		외부 부착 발견 병해충(3종 초과 시 검역관 소견란에 기재)		
	Yes	No	병해충(1) 정도	병해충(2) 정도	병해충(3) 정도
불승인(불합격) 수량		승인 수량		경유 승인번호	

검역관 소견	
<b>&lt;현장 검역&gt;</b>	<b>검역관</b>
	(서명)
	(서명)

<b>&lt;실험실정밀검역&gt;</b>	<b>검역관</b>
	(서명)
	(서명)

**작성 방법**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적어야 합니다.  
Applicant should fill only inside of thickened line.





### 경유기간 연장신청서

####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extension of transit period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Period should be completed	Three days

경유 승인번호 Approval certificate No. for transit	
품목명 및 수량 Item and Quantity	
차량종류 및 차량번호 Kind and plate No. of vehicle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 B/L No. and Container No.	
당초 경유기간 Approved transit period	
연장 희망기간 Desired extension period	
경유물품의 소재지 Current location of the transit shipments	
연장신청 사유 Reason for extension period	

「식물방역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유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I hereby make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extension of transit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1-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귀하

To : Chief of ○○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첨부서류 (Attachment)	없음 (None)	수수료 (Fees) 없음 (None)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경유기간 연장승인서

#### Approval certificate for the extension of transit period

경유 승인번호 Approval certificate No. for transit	
품목명 및 수량 Item and Quantity	
차량종류 및 차량번호 Kind and plate No. of vehicle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 B/L No. and Container No.	
당초 경유기간 Approved transit period	
연장 승인기간 Approved extension period for transit	

「식물방역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유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ransit period of above shipments were extended to the approved extension period as recorded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1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1-2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Month) 일(Day)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직인

Chief of ○○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0.31>

### 경유물품 도착신고서

#### Arrival declaration of transited shipments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Period should be completed Three days	

소유자 Possessor (Send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전화번호(Tel.): ]	
	주소 Address		

운송인 Transporter	성명 Name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Date of birth or passport No.	
	상호 Company	[전화번호(Tel.): ]	
	주소 Address		

품목명 Item	경유승인번호 Approval certificate No. for transit
수량 Quantity	도착일 Date of arrival
화물관리번호 Control No. of freight	B/L No.

「식물방역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지역 경유물품이 도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I hereby make a declaration of arrival of transited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1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3-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

년(Year) 월(Month) 일(Day)

신고인(Notifier) 서명 또는 인(Signatur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 · 사무소장 귀하

To : Chief of ○○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첨부서류 (Attachment)	없음 (None)	수수료 (Fees)
		없음 (Non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도착지 검역사항 및 검역결과 조치	주무	과장	소장	결재

품목명	품목 분류번호(HS)	단위	수량

검역일자	안전조치 문제발생 여부	경유 중 문제 발생조사 시 발견된 병해충 (3종 초과 시 검역관 소견란에 기재)		
		병해충(1)	병해충(2)	병해충(3)
년	월	일	No	Yes
소독		폐기		합격(경유 완료)
방법		방법		방법

검역관 또는 도착신고서 처리자 소견

<현장검역 또는 도착신고서 확인>	검역관
	(서명)
	(서명)

<실험실정밀검역>	검역관
	(서명)
	(서명)

#### 작성 방법

신고인은 굵은 선 안에만 적어야 합니다.  
Notifier should fill only inside of thickened line.

#### 처리 절차



<p>제 호</p> <p><b>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b></p> <p><b>Certificate of arrival declaration for transit shipments</b></p>			
소유자 Possessor (Send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운송인 Transporter	성명 Name		
	상호 Company		
품목명 및 수량 Item and Quantity		경유 승인번호 Approval certificate No. for transit	
화물관리번호 Control No. of freight		B/L No.	
<p>「식물방역법」 제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경유 물품에 대한 도착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rrival of above transited shipments have been decla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5-1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3-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Chief of ○○ (Regional/District) Office of QIA (Signature)             </p>			

210mm×297mm[백상지 80g/㎡]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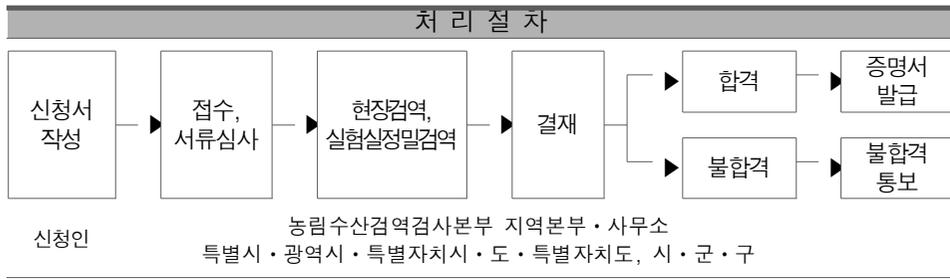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기관	처리기간 5일
수출자 (보내는 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받는 자)	성명	상호	
	주소		
운송수단		선적항	
출항일		도착항	
품목수	품목명	단위	수량
			학명
원산지	포장의 수와 종류	수입국(수출 상대국)	
검역 희망일시	검역장소	식별표시(Distinguishing Marks)	
신청인 요구사항			
<p>「식물방역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p>			
첨부서류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b>작성 방법</b>			
기재사항은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b>수출입식물 검역기록표</b>				주무	과장	소장	결재	
<b>검역사항</b>		품 명 :		수 량 :				
검역일		발견 병해충 (3종 초과시 검역관 소견란 기재)						
년	월	일	병해충 (1)	정도	병해충 (2)	정도	병해충 (3)	정도
<b>검역결과 조치</b>								
소 독				폐 기		합 격		
수 량	방법 1	수 량	방법 2	수 량	방법			
<b>현장 검역관 소견</b>				<b>현장 검역관</b>				
								(서명)
								(서명)
<b>실험실 검역관 소견</b>				<b>실험실 검역관</b>				
								(서명)
								(서명)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0.31>

Republic of Korea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b>PHYTOSANITARY CERTIFICATE</b>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f _____ No: _____ TO: The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_____	
DESCRIPTION OF CONSIGNMENT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_____ 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_____ 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_____ Distinguishing marks: _____ Place of origin: _____ Declared means of conveyance: _____ Declared point of entry: _____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_____ Botanical name of plants: _____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lants, plant products or other regulated articles described herein have been inspected and/or tested according to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the quarantine pests, including the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o conform with the current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DDITIONAL DECLARATION	
DISINFESTATION AND/OR DISINFECTION TREATMENT	
Date: _____ Treatment: _____ Chemical(active ingredient): _____ Duration and temperature: _____ Concentration: _____ Additional information: _____	
	Place of issue: _____ Name of authorized officer: _____ Date: _____ (Signature) _____
※ No financ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is certificate shall attach to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to any of its officers or representatives.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신설 2012.1.13>

(앞쪽)

<b>ORIGIANL</b>
<b>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b>
Certificate No. <u>IPQAB-PORT NAME-0000(연도)-000(일련번호)</u>
This is to certify that the vessel, described below, was inspected as much as possible by the inspector of a certification body and is considered to be free from AGM at the time of the inspection.
1. Name and type of vessel: _____ 2. Nationality, IMO number and gross ton of a vessel: _____ 3. The estimated date of departure: _____ 4. Port of inspection and place of pier: _____ 5. Name of Shipping Company or Owner: _____ 6. Receipt No.: _____
ADDITIONAL DECLARATION
(Stamp of Organization) _____ Date of inspection: _____ International Plant Quarantine _____ Name of inspector: _____ Accreditation Board (Signature of inspector)
※ No financ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is certificate shall attach to the International Plant 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or to any of its inspectors or representatives.

210mm×297mm(일반용지 82g/m<sup>2</sup>(복사방해용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신설 2012.1.13>

(앞쪽)

제 호  <b>식물방제공무원증</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div> 성 명  <b>농 촌 진 흥 청</b>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m <sup>2</sup> ]
(뒤쪽)
<b>식물방제공무원증</b>  소 속: _____ 직 급: _____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3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식물방제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농촌진흥청장 직인</b>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앞쪽)

제 호

## 역학조사반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색상: 노란색)

(뒤쪽)

### 역학조사반원증

소 속: \_\_\_\_\_  
직 급: \_\_\_\_\_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직인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긴급 방제명령서

수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 치 내 용		[ ]소독 [ ]제거 [ ]폐기 [ ]재배제한 [ ]기타			
조 치 품 목 명		수 량			
조 치 장 소					
조 치 기 간					
조치물 소재지					
조 치 방 법					
<p>1. 「식물방역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p> <p>2. 이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3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p>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촌진흥청장 시 · 도 지 사		년    월    일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10.31>

제 호  <b>방제비용 부담 통지서</b>				
부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담금액		원	납부기일	년 월 일까지
방제 실시지역				
방제 면적				
납부 장소				
방제비용 산출근거				
「식물방역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방제비용을 위와 같이 부담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5px;">직인</span>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31>

### 손실보상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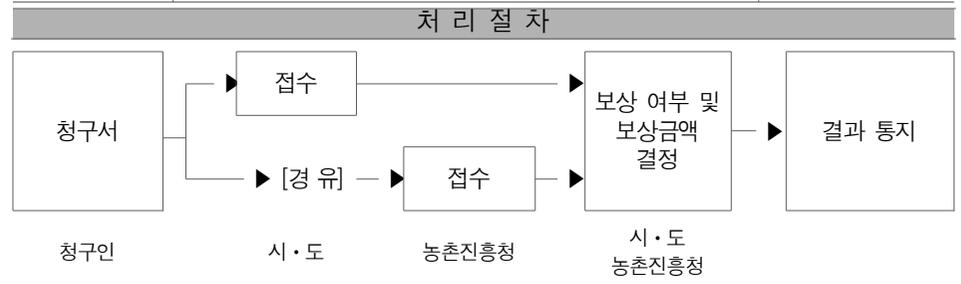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금액				
구분	단위	단가	수량	금액
계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하면서 위와 같이 비용이 들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시 · 도 지 사

첨부서류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생지			
약제명		수량	
발생상황	피해물의 종류	발생면적	
	발생원인	피해면적	
	전망		
농업인 등이 방제하기 어려운 이유			

「식물방역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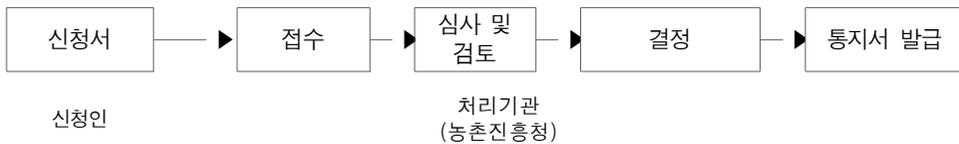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

약제명		수량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양여일시	년 월 일 시 분		
양여장소			
사용방법			
양수인 준수사항			

년 월 일에 접수한 방제용 약제의 양여신청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여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0.31>

### 수령증

약 제 명	
수 량	
수령 장소	
수령 일시	

「식물방역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위와 같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0.31>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상호) 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열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열처리시설 수	내부 용적(㎡)

「식물방역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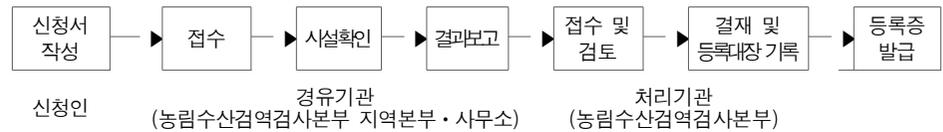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 2.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합니다) 3. 열처리시설 명세(열처리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작성 방법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열처리시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열처리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No.			
<b>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b> <b>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Heat Treatment of Wood</b>			
법 인 (상호) 명 Name of Company			
대 표 자 성 명 Name of Representativ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 업 장 소 재 지 Location of Business			
열처리시설 소재지 Location of Heat Treatment Facility			
열처리시설 수 Number of Heat Treatment Facilities		내부 용적(m <sup>3</sup> ) Capacity	
<p>「식물방역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registered to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Article 40-1 of the Plant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43-2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s.</p> <p style="text-align: center;">년(Year) 월(Month) 일(Day)</p>			
<b>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b>		<b>직인</b>	
Commissioner of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210mm×297mm[백상지 120g/m<sup>2</sup>]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법인(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열처리시설 소재지	대표자 성명	처리능력		비고 (용량)
						열처리 시설 수	내부 용적 (m <sup>3</sup> )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10.31>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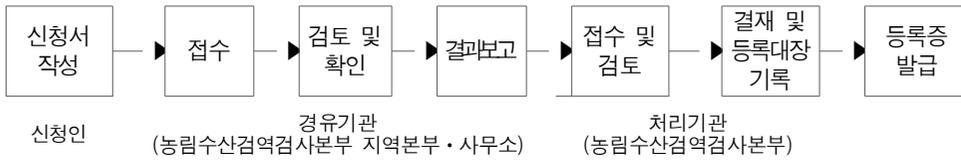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열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사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1부	
	3. 등록증이 헐어 뚫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2.10.31>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기관	처리기간	4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열처리업체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열처리시설 소재지			
	열처리시설 수	내용적(㎡)		
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양수 [ ] 상속 [ ] 기타( )		

「식물방역법」 제4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1부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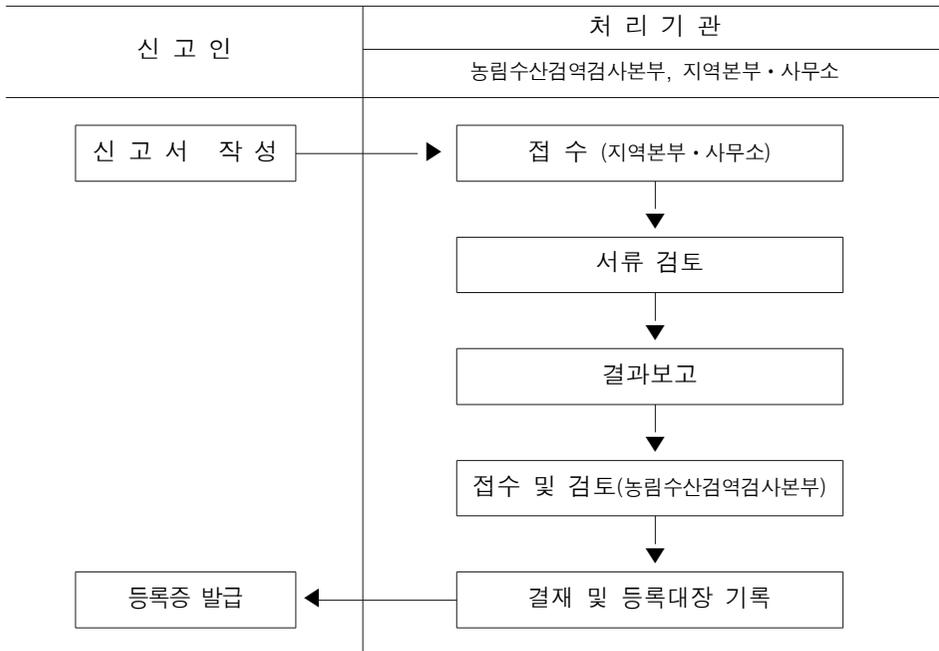
#### 작성 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계를 받는 사람”란에 신고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열처리시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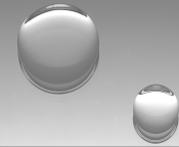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27호) ..... 141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27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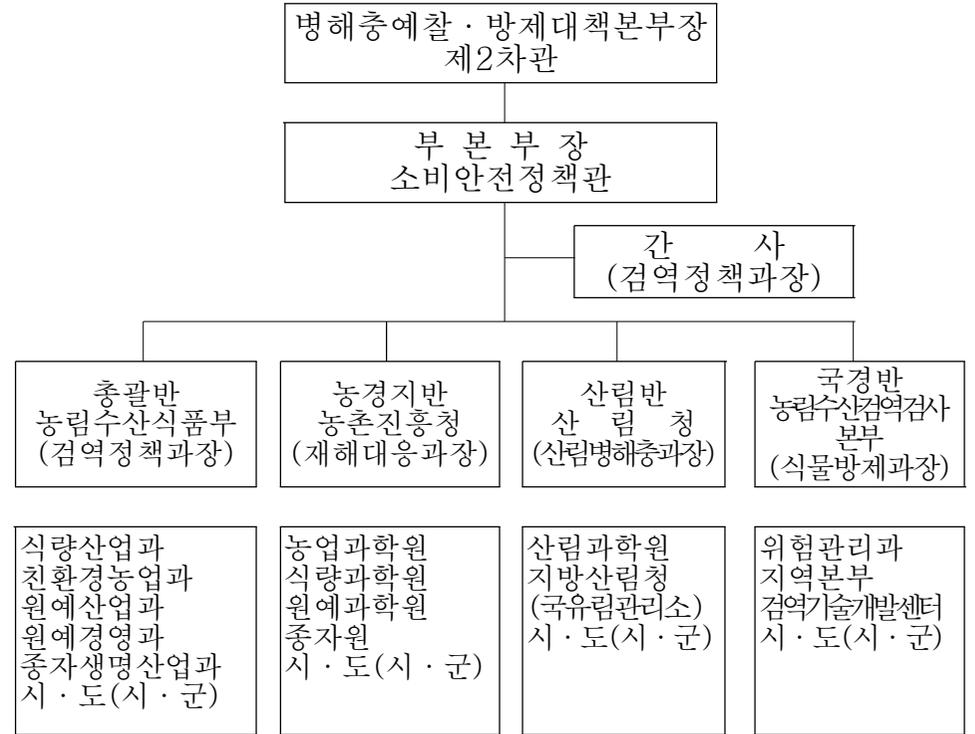
**제2조(시기)**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

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제3조(구성)** ①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2차관이, 부분부장은 소비안전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

② 총괄반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

③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

② 병해충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임무를 총괄·지휘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병해충대책본부 설치시에는 각 반장이 소속한 기관에서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편성·운영한다.

- ② 총괄반은 병해충대책본부 운영 종료시까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에서 각1명씩 파견을 받아 운영한다.
- ③ 총괄반장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의 병해충 예찰·방제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